#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,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**(안 제15조제3호, 제5호 개정)**

나.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개발제한 배제대상 건축물 확대 및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을 연접개발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완화. **(안 제17조의2, 제17조의3, 별표 26호 신설)**

다.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기존공장, 창고등 기존부지 내에 증축 시 성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퍼센트까지 허용.**(안 제53조 제4항 신설)**

라.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.**(안 제53조의2 신설)**

마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른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(60퍼센트 → 70퍼센트)하고,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(80퍼센트) 완화적용.**(안 제54조 5호, 6호 개정)**

바.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설치가 가능 하도록 완화.**(안 제57조의2 신설)**

사. 기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및 관리지역 미 세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. **(안 제65조제2항, 부칙 제4조 개정)**

4. 관련법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, 제55조, 제84조, 제93조, 제111조, 부칙 제13조

○ 규제완화를 위한 후속조치(도시계획조례 규정)이행촉구 :
경북도 도시계획과-367(2010.8.12)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안은

○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제한 완화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

○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을「성주군 도시계획조례」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과 관련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
○ 특히 본 조례는 복합민원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조례의 개정 등으로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임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